무기계약직원규정

2021.2. 5 제정2022.6. 20 개정2023.9. 27 개정2024.12. 26 개정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무기계약직원의 채용,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무기계약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무기계약직원"이란 「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」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.
 - 2. "상시·지속적 업무"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.
- 제4조(정원) ① 무기계약직원의 정원은 「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」 [별표2]에 명시되어 있는 본교 일반직원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.
 - ② 무기계약직원의 정원은 [별표 1]에 따라 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장 채용

- 제5조(채용) ① 무기계약직원은 상시·지속적 업무에 대해 「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」 별표2의 사무직 정원이 모두 충원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채용한다. 다만,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직 정원이 모두 충원되지 않더라도 별표1 무기계약직 정원표 내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.<개정 2022.6.20.>
 - ② 무기계약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채용하고,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채용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다.
 - ④ 신규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둔다. 다만, 담당 예정 직무와 관련한 충분한 자격과 경력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고, 신규임용일 기준 3년 이내에 본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.

- ⑤ 제4항에 따라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제6조(임용결격) 「직원인사규정」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제3장 복무

제7조 (복무) 무기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복무규정」에 따른다. 다만, 특수한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시간 등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제8조(휴가) 무기계약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「복무규정」에 따른다.

제4장 인사

제9조(직원인사위원회 심의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.

- 1. 무기계약직원의 채용 및 전보에 관한 사항
- 2. 무기계약직원의 포상 및 직위해제, 징계에 관한 사항
- 3. 무기계약직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
- 4. 무기계약직원 인사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10조(근무성적 평정) ①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근무성적을 평정한다. 다만, 신규채용·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②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, 기타 필요한 사항은 「직원근무성적평정내규」에 따른다.
 -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무기계약직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11조(전보)① 무기계약직원은 최초 임용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다른 직원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.
 - 1. 대학 운영 및 인사정책 상 불가피한 경우
 - 2.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
- 제12조(휴직 및 복직) 무기계약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「직원인사규정」에 따른다.

제5장 신분보장

- 제13조(신분보장) 무기계약직원은 형의 선고·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- 제14조(정년) ①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- ② 무기계약직원은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퇴직한다. 제15조(계약해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결근하는 경우
- 3. 정신질환 · 신체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
- 4.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5. 고의·중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
- 6. 근로계약 시 정한 복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7. 민법 제9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
- 제16조(직권면직 등) 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이 「직원인사규정」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.

제6장 보수

- 제17조(보수) ① 보수는 연봉제(명절수당 별도 지급)를 원칙으로 한다.
 - ② 보수는 [별표 2]의 무기계약직원 연봉표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12회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.
- 제18조(보수의 계산과 지급) ① 무기계약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. 다만,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.
 - ② 면직자 또는 휴직자의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9조(퇴직금) 무기계약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.

제7장 상벌

- 제20조(포상)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무기계약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, 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「직원인사규정」 및 「교직원상벌규정」에 따른다.
- 제21조(징계) 직무상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무기계약직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며.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직원인사규정」 및 「교직원상벌규 정」에 따른다.

제8장 보칙

제2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, 「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」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<2021. 2. 5.>

3-1-28-4 무기계약직원규정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무기계약직원은 시행일 현재 기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하며 재계약 시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<2022. 6. 20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9. 27.>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, [별표2]의 개정사항은 2023년 3월 1 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<2024. 12. 26.>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* 별표1, 별표2 비공개